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35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전진숙·양부남·조인철

안도걸 · 김정호 · 박희승

김윤덕 • 허종식 • 박 정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 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의3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거리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율을 가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 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 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창업하거나 신설 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 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③ ~ ⑤ (생 략)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⑩ (생 략)

하는	바에	따라	감면율을	가중
하여여	야 한다	7.		

- ③ ~ ⑤ (현행과 같음)

<u>방법,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u> 근로자의 범위-----

(7) ~ (1) (현행과 같음)